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4-97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기간: 2024.09.06. ~ 2024.09.19.(14일)
-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주소
1	박범주	75.00.19.	0178200274100000185	₩2,260,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시내2길
2	이종영	66.00.04.	0178200274100008863 0178200274100008222 0178200274100003477	₩22,302,000 ₩19,116,000 ₩19,116,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3	고광익	67.00.05.	0178200274100008836 0178200274100008220 0178200274100008835	₩8,920,800 ₩40,002,000 ₩42,480,000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125번길
4	백성준	80.00.26.	0178200274100008242	₩24,034,250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2길
5	이재근	63.00.06.	0178200274100008237 0178200274100008860	₩31,081,200 ₩53,100,0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울량로
6	조성윤 (리치플러스)	81.00.02. (140-02-87707)	0178200274100000182 0178200274100000183 0178200274100000184 0178200274100000187	₩30,000,000 ₩26,200,000 ₩16,200,000 ₩18,0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1045번길
7	주식회사 시리우스	150111-0220462	0178200274100003301	₩4,948,38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1, 6층 604호(산남동)
8	곽미경	66.00.23.	0178200274100008842	₩31,860,000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59길
9	엄장민	80.00.30.	0178200274100000191	₩18,000,000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10길
10	이갑순	54.00.07.	0178200274100008845	₩31,86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반석로5번길
11	최용규	59.00.26.	0178200274100008235	₩13,381,2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과상미로17번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주소
12	남성순	55.00.06.	0178200274100008857	₩31,860,000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도화로
13	남기열	64.00.15.	0178200274100008240	₩31,860,000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1안길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5)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
-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증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 나.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